복리후생관리규정

제 정 1993.10.28 개 정 2017.07.27 개 정 1994.10.07 개 정 2018.08.22 전문개정 1999.04.27 개 정 2021.05.20 개 정 2004.12.09 개 정 2006.12.18 개 정 2007.08.30 개 정 2010.12.31 개 정 2015.04.30 개 정 2016.12.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 일반직 및 별정직 직원(이하"임직원"이라 한다)의 복리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0>

제2조(용어의 정의) "복리후생비"라 함은 직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관련법령 및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보수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제 복리후생비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2 장 보건관리

- 제4조(의료시설)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회사는 의료시설을 설치, 운용하거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을 지정,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건강진단)**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직원에 대한 건강진 단을 실시한다.
- 제6조(직장체육) ① 직원의 체력증진 및 협동정신함양을 위하여 체육행사를 실시한다.
 - ② 제 1항의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주택자금 <삭제 2021.05.20>

제 4 장 복리후생비

제10조(복리후생비의 종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정복리후생비
- 2. 기업복리후생비
- 3. 선택형복리후생비
- 제11조(법정복리후생비) ① 법정복리후생비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② 법정복리후생비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있다. <개정 2016. 12. 21>
- 제12조(기업복리후생비) ① 기업복리후생비는 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② 기업복리후생비에는 동호회지원비, 체육행사지원비 등이 있다.<개정 2008.12.29, 2010.12.31, 2016.12.21, 2021.05.20>
 - ③ 삭 제 <개정 2021.05.20>
- 제13조(선택형복리후생비) ① 선택형복리후생비는 직원의 생활향상 및 복지개선을 위하여 지원되며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② 선택형복리후생비는 기본선택형복리후생비와 자율선택형복리후생비로 한다.
 - ③ 선택형복리후생비는 직급, 근속년수,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개정 2021.05.20>
 - ④ 직급별 복리후생비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04.12.9>/개정 2006.12.18>/개정 2007.8.30>/개정2015.4.30>
 - ⑤ 근속년수별 복리후생비는 "별표2"과 같다.
 - ⑥ 부양가족에 따른 복리후생비는 "별표3"과 같다.<개정 2006.12.18</p>
- **제14조(선택형복리후생비의 운영)** ① 기본선택형복리후생비는 건강유지 및 재해보장을 위한 보험적 성격의 항목으로 운영한다.
 - ② 자율선택형복리후생비는 건강관리, 생활복지, 자기계발, 문화생활분야 등 선택적 성격의 항목으로 유영하다.
 - ③ 선택형복리후생비는 개인별로 관리되며 당해년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 ④ 선택형 복리후생비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기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 제15조(기업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5.20>
 - 1. 지급기준일 : 지급기준일은 별도로 정한다.
 - 2.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며, 휴직·정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다만, 공상휴직자는 예외로 한다.
 - 3. <삭제 2016. 12. 21>
 - 4. 해외사업소 근무자, 국내·외 위탁교육자에 대한 복리후생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5. 복리후생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

제 5 장 보 칙

제16조(위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리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별정직 및 파견자의 복리후생비) 별정직 및 파견자의 복리후생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05.20>

- 1. 계약직원 : 입사시 조건에 따른다. <개정 2021.05.20>
- 2. 전임직 및 시간선택제 : 일반직직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05.20>
- 3. 파견자 : 파견시 조건에 따른다.

제18조(임원의 복리후생비) 임원의 복리후생비는 법정복리후생비 및 의료, 보건관리비를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 복리후생비는 이 세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며 정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함께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지급된 중식보조비, 문화활동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3조 제5항 별표2의 근속년수 1년미만은 2020년 입사한 직원부터 적용한다.

직급별 복리후생비

(단위 : 원)

직급	금액	직급	금액
1급	-	5급 <u>1</u>	275,000
2급	-	5급 2	225,000
3급 <u>1</u>	550,000	6급 <u>1</u>	175,000
3급 2	475,000	6급 2	135,000
4급 <u>1</u>	460,000	7급	100,000
4급 <u>2</u>	430,000		
4급 <u>3</u>	400,000		
4급 <u>4</u>	325,000		

근속년수별 복리후생비

(단위 : 원)

근속년수	금 액	근속년수	금 액	근속년수	금 액
1년 미만	130,000	11년 이상	515,000	22년 이상	900,000
1년 이상	165,000	12년 이상	550,000	23년 이상	935,000
2년 이상	200,000	13년 이상	585,000	24년 이상	970,000
3년 이상	235,000	14년 이상	620,000	25년 이상	1,005,000
4년 이상	270,000	15년 이상	655,000	26년 이상	1,040,000
5년 이상	305,000	16년 이상	690,000	27년 이상	1,075,000
6년 이상	340,000	17년 이상	725,000	28년 이상	1,110,000
7년 이상	375,000	18년 이상	760,000	29년 이상	1,145,000
8년 이상	410,000	19년 이상	795,000	30년 이상	1,180,000
9년 이상	445,000	20년 이상	830,000		
10년 이상	480,000	21년 이상	865,000		

부양가족별 복리후생비

(단위 : 원)

부양가족 구분	금액	비고
배우자	150,000	
자녀	75,000/인	자녀는 인원수 제한없음